

선거관리 세칙

2007년 1월 29일 제정 2007년 12월 7일 개정 2009년 8월 21일 개정 2010년 12월 15일 개정
2011년 12월 23일 개정 2012년 12월 14일 개정 2013년 12월 19일 개정 2014년 12월 17일 개정
2016년 1월 29일 개정 2017년 1월 18일 개정 2018년 1월 9일 개정 2019년 3월 20일 개정
2020년 3월 25일 개정 2021년 3월 17일 개정 2022년 3월 30일 개정

현 행 안	개 정 안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세칙은 현대위아지회(이하 "지회") 규칙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의거하여 선거관리 세칙으로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세칙은 입후보자를 사전에 지회에서 공지케 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본 세칙은 지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적용한다.	
제4조 (선거인)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전월 말까지 조합원 수를 칭하며,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 (선거권 및 선거권 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선거권을 부여한다.선거권 제한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선거인 명부작성 및 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에 열람 및 배포한다.	
제7조 (선거사무의 협조) 지회는 선거사무에 의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 행 안	개 정 안
제8조 (선거일) <p>선거일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9조 (구성) <p>선거업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 한다</p>	
제10조 (선출 및 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관리 위원은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선거관리 위원이 조합 또는 지부, 지회 임원 및 대의원에 출마하고자 할시 선거 10일 이전에 사퇴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 선거관리 위원 선출 시까지 한다. 	
제11조 (확정공고) <p>확정된 위원은 최소 선거일 7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p>	
제12조 (임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관리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며,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선거관리 부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업무대행한다. 선거관리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 (중립) <p>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있어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못한다.</p>	

현 행 안	개 정 안
제14조 (기능) <p>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후보자의 등록, 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 추첨 2. 선거인 자격심사 및 명부작성 3. 투·개표소의 설치 4. 투·개표의 철저한 관리 5. 입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등록 6. 당선자 결정 및 선거록의 작성 7. 선거운동의 통제 및 승인 8.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부착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사항 10. 선거종사원 결정 11. 무효표 결정 및 감표 업무 <u>12.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u> 	제14조 (기능) <p>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후보자의 등록, 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 추첨 2. 선거인 자격심사 및 명부작성 3. 투·개표소의 설치 4. 투·개표의 철저한 관리 5. 입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등록 6. 당선자 결정 및 선거록의 작성 7. 선거운동의 통제 및 승인 8.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부착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사항 10. 선거종사원 결정 11. 무효표 결정 및 감표 업무 <u>12. 합동연설회 개최</u> <u>13.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u>
제2절 선거관리 업무	
제15조 (통제)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측의 개입으로 선거인의 권리행사가 방해 또는 동조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2.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행위를 했을 때 3.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며 선거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4.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연의 공여, 공여를 약속한 행위 5. 직위나 단체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유로운 선거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현 행 안	개 정 안
제18조 (투표시간 및 투표용지모형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3일전까지 확정하여 공고 한다. 2. 광주공장은 투표시간 및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투표소의 설치) 1. 지회장 선거 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3일전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대의원 선거 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각 선거구별 투표장소를 선거 3일전까지 공고한다. 3. 부지회장, 감사 선거 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대의원 회의 장소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제20조 (투표용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관례에 준하여 제작한다.	
제21조 (날인)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 위원회의 날인이 되어야 한다.	
제22조 (투표) 1. 선거인은 입후보자 1인에 한하여 기표한다. 2. 선거인은 기표 시 지정된 도구로 기표하여야 한다.	
제23조 (투·개표 참관) 1. 선거관리 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시는 참관인에게 선거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 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3. 입후보자는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참관인은 본 세칙 제4조(선거인)에 의한 조합원으로 구성 하며, 지회규칙 제28조(임원) 및 선거관리 위원은 될 수 없다.	

현 행 안	개 정 안
제24조 (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입후보자(찬·반)에게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1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4. 어느 후보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표도구 이외의 사항을 기입한 것 6. 두 후보자 란의 기표란선상에 기표한 것 	
제 3 장 선거운동	
제25조 (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등록필증교부 이후부터 투표전일 까지로 한다. 단, 각 후보자간의 합의로 선거운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후보자 외 임원 및 상근자는 근무시간 중(07시~15시40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제27조 (홍보물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사전 검토 후 승인하며, 즉시 게시한다. 2. 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인물 : 크기 - B4 이하 횟수 - 3회 이하 2) 후보벽보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한다. 크기 - A1이하, 세로 횟수 - 2회 이하 (1회 1매) 게시장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 	

현 행 안	개 정 안
<p>3. 상기 이외의 선거운동 관련 홍보물은 일체금지 하며 유인물, 대자보의 크기 및 횟수는 입후보자 간의 합의로 규정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u>제28조 (합동연설회) “신설”</u></p> <p>1.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창원(1,2조), 울산, 광주, 서산, 평택공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p> <p>2.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시, 장소, 연설험장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h2>제 4 장 임원의 선출</h2>	<p><u>제29조 (선거일자)</u></p>
<p>1. 지회장 선거는 회계 연도 말일에서 최소한 20일전 까지 하여야 한다. 단,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등록을 받아 7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p> <p>2. 감사, 부지회장 선거는 대의원회의 때 한다.</p> <p>3. 사정이 여의치 않을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연기할 수 있다. 단, 임기 회계 연도 말일 전까지로 한다.</p> <p>4. 보궐선거는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u>제30조 (등록)</u></p>
<p>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대의원회의)일 3일전까지 선거 관리위원회에 입후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입후보자가 직접 소명서를 작성하여 대리등록, 입후보가 가능하다.</p> <p>1. 소정의 입후보 등록서 1통</p> <p>2. 추천서 (복수추천 가능)</p> <p>1) 지회장은 본 세칙 제4조(선거인)에 의한 조합원 200명 이상</p> <p>2) 부지회장, 감사는 본 세칙 제4조(선거인)에 의한 조합원 100명 이상.</p>	<p>3) 반장이상 현장관리 감독자가 출마하고자 할 때 등록 10일 전 직책을 사임하여야 한다.</p>
<p><u>제30조 (등록확정 및 무효)</u></p> <p>선거관리 위원장은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본 세칙 제5조(선거권 및 선거권 제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후보등록을 확정하여 선거 3일전까지 공고한다.</p> <p>단, 심사결과 본 세칙 제5조(선거권 및 선거권 제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결합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u>제31조 (등록확정 및 무효)</u></p>

현 행 안	개 정 안
<p><u>제31조 (입후보 사퇴)</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후보등록을 끝하고 등록 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 사퇴를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직접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본인 합의 하에 입후보 등록 신청자 명단에서 삭제해야하며 이 절차가 끝나면 사퇴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p><u>제32조 (입후보 사퇴)</u></p>
<p><u>제32조 (선거방법)</u></p> <p>지회규칙 제30조(임원선출), 제31조(임원의 보궐선거), 제32조(임기)에 따른다.</p>	<p><u>제33조 (선거방법)</u></p>
<p><u>제33조 (당선)</u></p> <p>당선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출마의 경우 : 입후보자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는 탈락한다. 입후보자가 2명일 경우 : 입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시 최다 득표자 1명으로 찬반투표 실시 하며 찬반투표 시에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탈락한다. 입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 입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시 1,2득표자로 2차 투표를 실시 하며 2차 투표 시에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 할 시 다수 득표자 1인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항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 동수 이거나 3항에서 1,2 위 득표 숫자가 동수 일 경우 해당 2인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 투표 시에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시 다수 득표자 1인으로 찬반투표 한다. 1, 2, 3, 4항의 탈락으로 당선자가 없을 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후보했던 자를 제외한 다른 입후보자를 등록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p><u>제34조 (당선)</u></p>

현 행 안	개 정 안
<u>제34조 (보궐선거)</u> 임기 전에 다음 각 항에 해당 할 때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1. 선거 및 당선 전 무효결정이 있을 때 2. 지회장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탄핵이 결정 된 경우	<u>제35조 (보궐선거)</u>
<u>제35조 (감사, 부지회장)</u> 1. 입후보자 각 1인씩 찬반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 순으로 하며 그 인원은 대의원회의 때 정한다. 2.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대의원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u>제36조 (감사, 부지회장)</u>
제 5 장 대의원 선출	
<u>제36조 (선거일자)</u> 대의원선거는 조합, 지부 선거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u>제37조 (선거일자)</u>
<u>제37조 (등록)</u> 대의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입후보자가 직접 소명서를 작성하여 대리등록, 입후보가 가능하다. 1. 소정의 입후보 등록서 1통 2. 추천서 본 세칙 제4조(선거인)에 의한 조합원 10명 이상. 금속대의원은 40명 이상. 단, 복수 추천 가능	<u>제38조 (등록확정 및 무효)</u>
<u>제38조 (등록확정 및 무효)</u> 선거관리 위원장은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본 세칙 제5조(선거권 및 선거권 제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후보등록을 확정하여 선거 3일전까지 공고한다. 단, 심사결과 본 세칙 제5조(선거권 및 선거권 제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u>제39조 (등록확정 및 무효)</u>

현 행 안	개 정 안
<p><u>제39조 (입후보 사퇴)</u></p> <p>1. 입후보등록을 필하고 등록 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 사퇴를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직접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2. 1항의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본인 합의 하에 입후보 등록 신청자 명단에서 삭제 해야하며 이 절차가 끝나면 사퇴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p>	<p><u>제40조 (입후보 사퇴)</u></p>
<p><u>제40조 (당선)</u></p> <p>1. 단일입후보의 경우 :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해당 선거구는 대의원 선출을 유보한다.</p> <p>2. 입후보자가 2명인 경우 :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1명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해당선거구는 대의원 선출을 유보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인이 동수일 경우는 확인투표를 하여 확인 투표 시에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시에는 선출을 유보한다.</p> <p>3. 입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2명으로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 시에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시 다수득표자 1인으로 찬반 투표를 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해당선거구는 대의원 선출을 유보한다</p>	<p><u>제41조 (당선)</u></p>
<p><u>제41조 (대의원 불신임)</u></p> <p>대의원의 불신임은 지역구 조합원 1/3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회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구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과 참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p>	<p><u>제42조 (대의원 불신임)</u></p>

현 행 안	개 정 안
<u>제42조</u> (보궐선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신임이 결정된 경우 2. 당선인의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된 경우 3. 선거 및 당선에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사고선거구가 되었을 때 	<u>제43조</u> (보궐선거)
<u>제43조</u> (선거이의) <p>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입후보자 및 참관인이 이의 신청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결정한다.</p>	<u>제44조</u> (선거이의)
<u>제44조</u> (당선이의) <p>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증빙서류와 함께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며 그 결과를 선관위는 검토 결정하여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p>	<u>제45조</u> (당선이의)
제 7 장 부칙	
<u>제45조</u> (시행) <p>본 세칙은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p>	<u>제46조</u> (시행)
<u>제46조</u> (제정 및 개정) <p>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회의 재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로 결정한다.</p>	<u>제47조</u> (제정 및 개정)
<u>제47조</u> (통상관례) <p>본 세칙의 미비한 점은 선거관리 규정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p>	<u>제48조</u> (통상관례) <p>본 세칙의 미비한 점은 선거관리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p>